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본점·주사무소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윤영석의원안, 구자근의원안) ····· 2

Ⅰ.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9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본점·주사무소의 소재 지역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윤영석 의원안, 구자근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법인세율(제55조)

○ 지역 무관 법인세율 적용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table></td><td>□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table><tr><th rowspan="2">과세표준</th><th colspan="2">세율</th></tr><tr><th>구자근 의원안</th><th>윤영석 의원안</th></tr><tr><td>2억원 이하</td><td>4%</td><td>4.5%</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4%</td><td>9.5%</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16%</td><td>10.5%</td></tr><tr><td>3천억원 초과</td><td>19%</td><td>12%</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td></tr>
</table>

* 윤영석의원안 2024. 6. 5. 발의(의안번호 150), 구자근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95)

□ 2건의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

으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5%p 인하하려는 것이고, 윤영석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1]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2~2023)]

(단위: 천 명)

권 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4	-21	-33	-1	16	60	83	88	56	37	46
중부권	28	39	49	41	42	28	11	12	24	34	17
호남권	-7	-6	-8	-16	-18	-28	-25	-24	-16	-13	-15
영남권	-25	-23	-22	-40	-54	-69	-71	-78	-67	-61	-47

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자료: 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용 참조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2] 지역내총생산(GRDP)을 2001년~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2022년(전국 평균 2.5%)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한 한국은행의

1) 순이동자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의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로,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순이동자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이며 순 인구유입을 의미하고, 순이동자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로 순 인구유출을 의미함.

2)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3.1% → 2.5%)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6.1%→ 4.5%) 및 충북(4.5% → 4.5%) 지역은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울산(2.8% → -0.6%), 충남(6.6%→ 2.7%), 경북(4.8% → 0.1%), 경남(4.3% → 0.6%)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이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음.

[연평균 GR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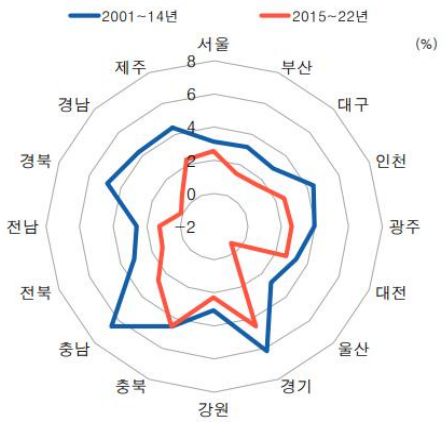

[지역간 GRDP 불균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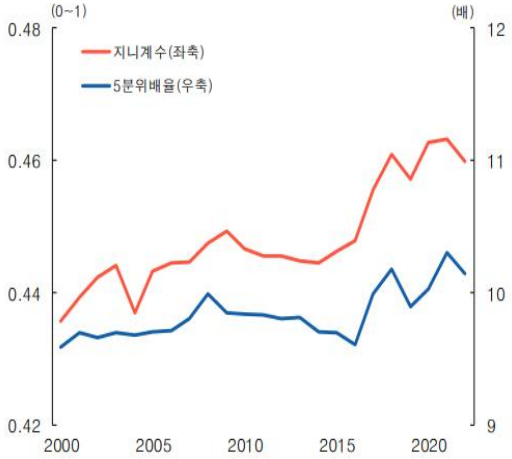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자본(자산)스톡 집중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면적 1㎢ 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38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1인당 인프라

3) 지니계수: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함
5분위배율(배): 상위 20%지역(16개 지자체중 1~3위)의 평균 생산액/하위 20%지역(14-16위)의 평균 생산액

규모도 비수도권 대도시[4]는 2,400만원으로 수도권 대도시(2,700만원)에 비해 낮음 수준임.[5]

□ 개정안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지방의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의 유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6]

[이스라엘 법인세율]

(단위: %)

연도	Priority Area A (낙후지역)	Priority Area B
2011년~2012년	10	15
2013년	7	12.5
2014년~2016년	9	16
2017년 이후	7.5	high tech: 6~16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2020.11.

4) 수도권 대도시는 서울, 인천이며 그 외 지역 대도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을 의미함.

5)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4.6.19

6) 이스라엘은 전국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투자유치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2020.11.)

□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과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이 본사등을 이전하기 위한 의사결정에는 지역 인프라, 기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지역간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둘째, 법인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의 경계에 있는 지역 간, 광역시와 광역시의 경계에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7)]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조세감면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넷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구자근의원안은 재정수입이 연평균 4조 9,630억원 감소하고, 윤영석의원안은 재정수입이 연평균 7조 3,485억원 감소함.

---

7)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지역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세 세수 감소 우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기업 설립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Ⅴ, 2023.7.31., 238-240면)).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구자근의원안	△4,063	△55,777	△59,437	△62,754	△66,117	△248,149	△49,630
윤영석의원안	△6,405	△81,535	△87,597	△93,339	△98,547	△367,424	△73,485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5